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나35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I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석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9.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56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A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법원

가.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22. 5. 17.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이 항소하자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22. 9. 23. 항소심인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2023. 4. 3.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 부인의 소를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관할법원은 이 법원이 된다.

나. 한편, 아래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파산채무자 C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21. 6. 14.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므로(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2019. 1. 4.부터 2019. 3. 2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F는 원고에게 6장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C는 연대보증의 의미로 위 각 차용지불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2019. 2. 15.부터 2019. 7. 25.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는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9. 18. ‘C는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는 G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H(D) 건물의 3층 96.32㎡부분(이하 ‘이 사건 3층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6. 9.경부터 ‘E’바를 운영하다가 2020. 6. 18.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1. G와 사이에 이 사건 3층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C는 2021. 6. 14.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하단165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2021. 8. 17.자 동안양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C는 A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자신이 2016. 9. 9.부터 운영해오던 유일한 재산인 ‘E’바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2020. 5. 1.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¹⁾.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2020. 5. 1. 'E'바에 대한 영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영업권 양도계약을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C와 피고 사이에 영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4.경 'E'바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승계를 하는 사람 'C', 승계를 받는 사람 '피고', 승계사유를 '양도양수'로 기재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3층부분에서 이전 상호와 간판 등을 이용하여 'E'바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와 피고 사이에 'E'바에 대한 영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2016.경부터 2020. 4.경까지 이 사건 3층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바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C가 'E'바를 폐업할 경우 인테리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피고가 위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하고 임대차종료 시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 G와 협의하여 2020. 5. 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C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G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항에서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필요에 의해 시설(기구 포함) 부분과 종전 및 전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부분도 완전철거 원상복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임대인에게 시설 권리금, 유익비, 필요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라) 피고가 관할관청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식품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인에 대한 기존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인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등 참조), 수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공법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C의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가 임대인 G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바의 상호, 간판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외형상 영업양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바)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영업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C가 피고 명의로 'E'바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피고 명의를 빌려 'E'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와 C 사이에 영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영업권 양도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고,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황기선, 판사 이상윤

1) 원고가 제출한 2023.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조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취지상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영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E'바 영업권의 가액과 원물반환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

